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물을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 등 사회소외 계층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도시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체육시설물 중 일부를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재위탁할 수 있게 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도시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체육단체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시의회 산업전문위원,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물중 일부를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체육단체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고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u>	<u>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고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물중 일부를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체육단체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사무의 위임 등) ○ 제144(공공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내용별첨】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5.21, 2008.12.31, 2009.1.13, 2009.8.5, 2009.11.20>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2의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 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 다. 삭제 <2007.9.20>
- 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삭제 <2007.9.20>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삭제 <2007.9.20>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행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같은 항 제
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